

제 7 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구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 8 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3. 8. 6  
行政財務委員會

#### 1. 審查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 1993年 7月 28日 區廳長提出
- 나. 回附日字 : 1993年 8月 2日 回附
- 다. 上程日字 : 第19回 永登浦區議會(閉會中)第2次 行政財務委員會(1993年 8月 6日) 上程議決

####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財務局長 梁大雄)

##### 가. 提案理由

민원 사무처리 규정 제2조 및 동 규정 민원 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발급토록 함에 따라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일부 명칭 변경이 있어 증명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 나. 主要骨子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폐지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변경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실이 현저할 때 납세의무자 신

청에 의하여 과세권자가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금에 대하여 징수를 유예하였음을 증명하는 징수유예증명서(지방세법 제39조 제2항) 등으로 변경

#### 3.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姜性熙)

- 가. '93. 8. 2 영등포구청장이 개정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및 동 규정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하여 지방세 관련 증명은 세목별로 증명을 발급토록 되어 있어
  - (1) 현행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은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 (2) 현행 시세 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은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과세증명, 지방세 유예증명 등으로
  - (3) 현행 재산세 과세증명은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지방세 관련증명의 명칭을 일부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나. 수수료 금액 전당 350원은 변경이 없이 동 민원사무처리규정 처리기준표와 일치시키는데 불과하므로 동 개정안은 요청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 4. 審查結果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증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188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1993. 7. 2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2조 및 동 규정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발급토록 함에 따라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일부 명칭 변경이 있어 증명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폐지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대체함에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변경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실이 현저할 때 납세의무자 신청에 의하여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가 확정된 세금에 대하여 징수를 유예하였음을 증명하는 징수 유예증명서(지방세법 제39조 제2항) 등으로 변경

### 3. 관련법규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 제2항

### 4.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증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종목란 “나”항 중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2),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을 (1)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2) “시세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2)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 지방세징수 유예증명”으로 (3) “재산세 과세증명”을 (3)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별표</p> <p>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p> <p>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54종)<br/>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br/>(1)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u>납세 증명</u><br/>(2) <u>시세완납 증명 또는 과세증명</u><br/>(3) <u>재산세 과세증명</u></p> | <p>별표</p> <p>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p> <p>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54종)<br/>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br/>(1) 세목별 납세증명<br/>(2) <u>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 증명, 지방세 징수유예 증명</u><br/>(3) 세목별 과세증명</p> |